의안번호	제 30 호
의 결	2018년 월 일
연월일	(제 회)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영은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8년 8월 28일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영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30 발의연월일 : 2018년 8월 28일

발 의 자 : 임영은 박우양 박문희 이상식

이상정·하유정·황규철 의원(7인)

1. 제안 이유

○ 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· 운용중인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으 로써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○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(안 제12조)

3. 조례안 : 붙 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

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제13조로, 제13조를 제14조로, 제14조를 제15조로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존속기한)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, 「지방재정법」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조(존속기한) 농어촌개발기금
	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
	12월 31일로 하며, 「지방재정법」
	제9조 제3항 및 제4조에 따라
	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<u>제12조</u> (감독)	<u>제13조</u> (감독)
<u>제13조</u> (준용규정)	<u>제14조</u> (준용규정)
<u>제14조</u> (시행규칙)	<u>제15조</u> (시행규칙)

관계 법 령

■ 지방재정법

- 제9조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신설 2014.5.28.〉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신설 2014.5.28.〉

부칙 〈제12687. 2014.5.28〉

제4조 ② 이법 시행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
■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

- 제4조(입법예고)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입안절차를 거치는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또는「법제업무운영규정」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예고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 하는 경우
 - 2.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